

	<b>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운영규정</b>	규정번호	3-4-23
		제정일자	2020.07.13.
		개정일자	2025.05.01.
		개정차수	3차
		소관부서	보건의료정보학과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(면허)에 따라 ‘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’(이하 “정평원”이라 한다)에서 정한 ‘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프로그램’(이하 “프로그램”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학칙의 범주 안에서 적용되며,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고 한다)에서 심의,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제2장 프로그램의 소속과 전입

제3조(프로그램의 소속) 2020학년도 1학기 의료정보과 및 2021학년도 1학기 보건의료정보학과로 신입학한 학생부터 본 프로그램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.

제4조(프로그램의 전입) ① 프로그램 소속이 아닌 편입생, 복학생, 전과생 등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프로그램으로 전입할 수 있다.

② 전입대상학생을 위하여 매학기 첫 주에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한다.

③ 전입을 희망하는 학생은 [별지 1]의 프로그램 이수 신청서와 직전 대학 또는 계열/학과의 성적증명서를 학습성과위원회에 제출한다.

④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입희망학생이 제출한 제3항의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대체 교과목 인정 여부를 판정한다.

⑤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.

## 제3장 프로그램

제5조(프로그램의 교육목표) ①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산업체, 졸업생, 교수, 재학생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설정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3년 주기로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를 검토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설정 및 적절성 검토를 위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(HIM)의 사회적 필요와 요구를 조사, 분석한다.

④ 설정 또는 개선된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학과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지한다.

제6조(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) 프로그램은 정평원의 교과목 이수체계에 근거하며, 프로그램 이수와 졸업을 위해서는 다음 각 항의 교과목 이수학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① 프로그램 최종성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교과목은 프로그램 최종성과와 연계되어야 한다.

② 프로그램 필수이수 교과목(이하 ‘필수이수 교과목’이라 한다)과 프로그램 특성화 선택이수 교과목(이하 ‘선택이수 교과목’이라 한다)을 53학점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.

③ 보건의료정보관리 필수 이수 교과목을 43학점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.

- ④ 보건의료정보관리 선택 이수 교과목을 10학점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.
- ⑤ 필수이수 교과목 중 정평원에서 지정한 실습 교과목은 대면 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.  
<신설 2024.12.01.>

제7조(프로그램의 학습성과) ①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소속 학생들의 학습 성과 성취도를 평가한다.

② 학습성과 성취도 개선을 위해 학기별 운영된 필수이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, 현장실습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 및 강의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, 검토하여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한다.

③ 학습성과 성취도 평가를 위해 운영된 교과목의 교육내용의 범위, 수준, 방법, 평가방식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한다.

④ 교과목 담당교수는 필수이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의 지속적 질 개선을 위해 매학기 정기적으로 교과목별 성취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.

⑤ 삭제 <2025.05.01.>

⑥ 운영위원회는 성취도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교과목의 지속적 질 개선 보고서(교과목 CQI 보고서)를 작성하여 교육과정 개선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. <신설 2025.05.01.>

제8조(학습성과 성취도 미달성자 관리) 프로그램 소속 학생들의 교과목 성취도를 평가하여 미달성자(교과목 총점 60점 이하(F))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학습 기회를 통해 교과목 성취도 달성 여부를 결정한다. <신설 2025.05.01.>

제9조(프로그램의 최종성과) ① 프로그램은 학과에서 설정한 인재상과 정평원이 제시한 프로그램 최종성과의 내용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설정한다.

② 프로그램 최종성과는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학과 홈페이지, 학내 시설 및 신입생 OT 자료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#### 제4장 교과목 이수체계

제10조(프로그램의 교과목 이수체계 준수) ① 프로그램 소속 학생들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에 따른 이수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보학과 교육과정표의 교과목 이수체계를 따른다.

② 교과목 이수체계는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학과 홈페이지, 학내 시설, 학과 신입생 OT 자료 등에 공지한다.

③ 프로그램의 최종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“선수·후수” 이수체계는 [별표 1]과 같으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.

제11조(프로그램의 교과목 이수체계 인정) ① 휴학 및 복학, 제적 및 재입학, 편입학, 기타 프로그램책임자가 인정하는 사유로 교과목 이수체계 준수가 불가능한 학생은 다음 각호 중 1개 이상을 만족하고 운영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교과목 이수체계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
1. 운영위원회가 시행하는 선행교과목 시험에 통과한 학생

2. 삭제 <2024.12.01.>

3. 선행교과목 연구 보고서 제출한 학생

4. 기타 운영위원회가 이수체계도를 준수하였음을 인정한 학생

②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이수체계도 준수에 대한 평가기준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.

제12조(프로그램의 이수포기) ① 프로그램 소속의 재학생은 소속 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

하여야 하며, 이를 포기하고 프로그램 외 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[별지 2] 프로그램 이수 포기 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삭제 <2024.12.01.>

#### 제5장 삭제 <2024.12.01.>

제13조(졸업이수학점) 최소 졸업이수학점은 대학 학칙에 따른다.

제14조(프로그램 이수자의 졸업요건) 정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이수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.

1. 정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에 따라 편성된 [별표 2]의 18개 필수이수 교과목 43학점 이상 및 [별표 3]의 선택이수 교과목 10학점 이상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
2. 학칙에 따른 졸업요건을 갖추고, 프로그램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위 명칭에 “보건의료정보관리전공”을 부기한다.

#### 제6장 프로그램책임자

제15조(프로그램책임자) ① 프로그램의 인증 평가 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책임자(이하 “책임자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책임자는 총장이 임명한 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책임자의 자격은 전임교원으로 한다(다만, 산학협력중점교원, 강의전담교원, 외국인교원, 특임교원은 제외한다).

④ 책임자는 프로그램의 조직, 관리, 지속적 검토, 기획, 개발 등을 총괄한다.

⑤ 책임자는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운영(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등)에 관한 제반 업무에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.

#### 제7장 운영체계

제16조(위원회 설치)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17조(위원회 구성)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자로, 위원은 보건의료정보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
제18조(위원회 역할) ① 운영위원회는 학습성과 달성, 학습성과 평가체계, 교육과정의 품질 평가 등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·의결과 인증과정의 관리를 담당한다.

② 삭제 <2025.05.01.>

제19조(회의 및 의결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. <신설 2025.05.01.>

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찬반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<신설 2025.05.01.>

제20조(교수업적평가) ① 프로그램 운영활동(보건의료정보관리 교과과정)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책임자 및 교수에게는 교수업적평가에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.

② 교육 개선활동(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활동,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·인증과 관련된 평가 참여 활동,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문항개발 및 출제 참여활동 등)에 참여한 교수에게는 교수업적평가에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.

## 제8장 학생지도

- 제21조(학생지도) ① 지도교수는 대학 학칙의 지도교수운영규정 범주 안에서 운영되며 학생회, 전공동아리 및 학생활동을 지도·육성한다.
- ② 지도교수는 전담지도 교수제로 교수·학생관계를 유지하여 대학생활의 적응을 도우며, 학습, 진로 및 취업지도를 위한 면담을 시행한다.
- ③ 프로그램책임자는 신입생, 프로그램 전입자를 대상으로 OT를 통해 프로그램 이수를 보장할 수 있는 지도 계획을 공지하여야 하며, 지도교수를 통해 교과목 이수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- ① 이 규정은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의료정보과운영규정은 2020년 7월 13일부로 폐지한다.

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학과명 변경으로 인해 소속 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, 변경 전 위원회는 이 규정의 위원회로 본다.

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